

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11월 20일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19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•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(2024. 11. 20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최광열 의원)

가. 제정이유

○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의3(민원실의 운영) 규정의 신설로 민원실의 운영방법이나 시간을 행정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포항시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
- 민원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
-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민원실의 휴무일에 관한 사항
-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
-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
- 현장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다. 관계법령

○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
- 상위법령인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의3(민원실의 운영) 규정의 신설로 민원실의 운영방법이나 시간을 행정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포항시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평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를 해소하고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, 현재 일부 면지역에 한해 시범 실시 중인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으로 민원인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 전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 무인 발급기, 대기 순번표 발급기 등 민원편의시설에 대해 확대 설치를 통해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